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6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국내 최초 에너지 자립 공공건축물이자 미래 건축물의 모델로서, 2012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시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 기후소양 함양에 기여해 왔음
- 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기존 위탁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의 역할도 추가하여 신규위탁함으로써 서울시 환경교육의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 위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상암동 1535-3)
  - 규모: 연면적 3,762㎡(지하1층, 지상3층), 대지면적 13,039㎡
  - 주요시설: 홍보·전시관, 기후변화배움터, 체험학습실, 다목적실 등
  - 개관일: 2012. 12. 12.(준공일 2012. 9. 19.)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4.1.1. ~ 2026.12.31.(3년)
- 위탁유형: 시설형 위탁(예산 지원)
- 선정방식: 공개모집
- 사업비 : 1,545백만원(2024년 편성기준에 따라 세부내역 재산출 예정)
  - ※ '23년 예산 대비 3% 증액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예산(약3억) 신규 편성
- 위탁업무

###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시설 관리 ]

- 제로에너지하우스 건물 에너지 모니터링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건물 및 야외부지 관리
- 전시·체험시설물 및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제반 시설, 장비 등 재산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등 방문객 안전사고 관리

###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사무 ]

- 신재생에너지 최신 동향기술 정보 제공 및 제로에너지하우스 운영 모델 공유
- 에너지·기후위기 주제 전시 기획 및 스마트 그린 전시관 구축
- 시민 참여 에너지·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인력 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등

### [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신규) ]

- 서울시 환경교육 정책 수립 관련 연구 및 조사
- 국가, 기초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 주체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보급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기반 구축

## 다. 기존 민간위탁 추진현황

### ○ 위탁업무: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관리 사무

- 에너지·환경 분야 시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시설 운영·관리 및 건물·효율화 연구·모니터링 및 운영 모델 공유

### ○ 운영성과

- 에너지·기후변화 전문 체험 교육 통한 시민 기후 소양 함양에 기여
- 국내 최초 ZEB(제로에너지빌딩) 공공건축물로서 위상 강화

### ○ 운영실적

- 방문객 수 (단위: 명)

분 야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5월	누계
전시(단순) 관람	138,752	21,088	20,965	2,863	7,499	16,205	14,610	218,827
프로그램 참여	221,007	70,986	72,223	10,205	7,983	22,104	11,546	415,817
총 방문객	359,759	92,074	93,188	13,068	15,482	38,309	26,156	634,644

### - 주요 운영 프로그램

구분	내용
정규 프로그램	유아, 초등, 중·고등, 개인/가족
비정규 프로그램	방문교육, 문화행사, 방학특강, 전문교육, 기념세미나
온라인/비대면 프로그램	온라인, 원격수업, 교구배송
투어 프로그램	신나는 에코투어, 신재생에너지 투어, 환경재생문화 투어
전시 해설	일반 전시해설, 제로에너지 건축기술 전문해설

## 라. 주요 변동사항

- 사무추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
  - 근거: 환경교육법 제25조, 환경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 추진배경: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전시·체험교육 시설 인프라 활용, 기존 센터 위탁사무 범위(교육 운영 등)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및 전문성 강화
- 인력추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인력(증 3명)
  - 인력구성 : 14명(센터장 1, 환경교육센터 6, 교육운영국 3, 시설운영국 4)

## 마. 민간위탁(신규위탁) 필요성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없어 환경교육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담기구의 구축이 필요함
  - ※ 2023.7. 현재 환경교육센터 미지정 광역지방자치단체: 2개(서울, 광주)
-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축물로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건물에너지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 환경·에너지 교육 프로그램·교재 개발, 전문인력 양성, 환경교육 연구·조사 등 서울시 환경교육 기반 구축 및 직접교육·전시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업무 능력과 경험이 필요함
-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의 기술, 경험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력·예산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교육법)

######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3.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④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밖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

-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 ③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현황('23.7월 현재)

구분	센터명	지정기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보전협회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대구환경교육센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재)울산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센터
경기도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2)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강원도 환경교육센터 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충청북도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청주국제에코플렉스((사)풀꿈환경재단)
충청남도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전라북도	전라북도 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연수원((사)자연생태환경연구소)
전라남도(3)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1호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2호	신안군생태교육원((사)섬생태연구소)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제3호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경상북도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경상남도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조병훈 (☎ 2133-3538)